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31 선고 2019가단84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피 고 1.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진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C와 D 사이에 2015. 12.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6,532,5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36,532,595원,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691,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5. 12.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6,532,5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A,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6,532,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15. 12.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3,691,2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691,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각 “2015. 12. 31.”를 “2013. 8. 17.”로 고치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13,240,39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1.부터 2010. 10.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97349 판결).

나. E는 2013. 8. 17. 사망하였고 처 F, 자 D, G, H, I, 피고 A, 피고 C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다. D은 2015. 12. 3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고 A, C와 상속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8. 피고 B(피고 A의 배우자) 명의로 2016. 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15.과 2018. 2. 27. J조합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등)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20. K조합 명의의 2013.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척기간

피고는 사해행위일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은 2015. 12. 31.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9.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피고들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결이 2010. 12. 18.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20. 12.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11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3.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20. 12.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으로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D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선의(공동담보 부족을 알지 못한 점)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이 법원의 J조합, L조합, K조합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9. 9. 24.기준 피보전채권액은 36,532,595원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와 변론종결일 기준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이래 목록 제1항 2/15 지분 합계는 39,452,637원이다.

목록	부동산의 표시	가액	피담보채무	차액	지분 2/15
제1항	M 전	35,802,000	14,490,000	21,312,000	2,841,600
	N 답	34,995,064	0	34,995,064	4,666,009
	O 답	292,798,687	106,727,624	186,251,063	24,833,475
	P 대	28,253,380	0	28,253,380	3,767,117
	P 건물	25,083,270	0	25,083,270	3,344,436
제2항	Q	43,563,630	15,879,316	27,684,314	3,691,242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 39,452,6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36,532,595원,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691,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가. 경상북도 예천군 전 1326㎡
- 나. 경상북도 예천군 담 894.9㎡
- 다. 경상북도 예천군 담 7487.5㎡
- 라. 경상북도 예천군 대 499㎡
- 마. 경상북도 예천군
-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 홍백들조 스테이트 지붕 단층 주택 59.3㎡
- 부속건물
- 토담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창고 38㎡
- 토담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창고 12㎡
2. 경상북도 예천군 담 2400.2㎡. 끝.

